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공정거래위원회 신설기구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기업 거래결합심사국 기술유용조사과를 제외하는 한편,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설치한 가맹유통팀의 존속기간 및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각 1명씩 행정서기에서 행정서기보로 하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을 각각 2025년 9월 9일까지에서 2027년 9월 9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총리령 제 호

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총리령 제164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“2025년 9월 9일”을 “2027년 9월 9일”로 하고, “2025년 9월 10일”을 “2027년 9월 10일”로 하며, 제3조제1항 중 “2025년 9월 9일”을 “2027년 9월 9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4]

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(제19조 관련)

조직	정원	평가기간
조사관리관	1명 (고위공무원단 가급 1명)	2026년 3월 31일까지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총리령 제1643호 공정거래위원회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부칙	총리령 제1643호 공정거래위원회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부칙
제1조(시행일) ① (생략)	제1조(시행일) ① (현행과 같음)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하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)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행정서기보 1명 및 별표 3의2의 행정서기보 1명은 각각 <u>2025년</u> <u>9월 9일</u> 까지 존속하며, <u>2025년</u> <u>9월 10일</u>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 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행정서 기 1명 및 별표 3의2의 행정서 기 1명으로 본다.	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하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7년</u> <u>9월 9일</u> ----- <u>2027년</u> <u>9월 10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) ① 「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서울지방공정거래 사무소 가맹유통팀은 <u>2025년 9</u> <u>월 9일</u> 까지 존속한다.	제3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7년 9</u> <u>월 9일</u>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[별표 4]

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
평가대상 조직(제19조 관련)

조직	정원	평가기간
조사관리관	1명 (고위공무원단 가급 1명)	2026년 3월 31일까지
<u>기업거래</u> <u>결합심사국</u> <u>기술유용</u> <u>조사과</u>	<u>0명</u>	<u>2025년</u> <u>9월 30일까지</u>

[별표 4]

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
평가대상 조직(제19조 관련)

조직	정원	평가기간
조사관리관	1명 (고위공무원단 가급 1명)	2026년 3월 31일까지